

제100차 이사회 회의록

사 회 복 지 법 인 금 강



제100차 이 사 회 회 의 록

1. 일 시 : 2026년 09월 29일 (화) 15:00

2. 장 소 : 정인사 교육관

3. 이사회 사전통보일시 및 방법

2026년09월09일 / 이사회 개최 공문 우편발송

4. 참 석 자 : 대표이사 : 이재경(원행스님)

이 사 : 여무의(원택스님), 신의수(원타스님), 김윤현(원여스님),

장준철(원당스님), 정영건, 곽인철, 오정옥

감 사 : 김명화

(총 이사수 10명 / 참석이사수 8명 / 감사 1명)

5. 부의안건

1) 제1호 의안

- 산하시설 26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건 : 원안대로 의결

■ 2026년 1차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 마산노인일자리창출지원센터

■ 2026년 2차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 금강노인종합복지관, 금강노인문화센터,
경상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 경남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마산시니어클럽

■ 2026년 3차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 사회복지법인 금강

2) 제2호 의안

- 사회복지법인 금강 정관 조문 일부 변경(안) 재의결의 건 : 원안대로 의결

■ 제1장 제1조(목적) 조문변경

■ 제1장 제4조(사업의 종류) ①④⑤ 조문변경

■ 제1장 제5조(자산구분) ① 조문변경

3) 제3호 의안

- 법인 임원(정영건 이사) 사임의 건 : 원안대로 의결

4) 제4호 의안

- 법인 임원(정영건 이사) 재선임의 건 : 원안대로 의결

5) 제5호 의안

- 법인 임원(대표이사, 이사) 임기 만료에 따른 선임의 건 : 원안대로 의결

6) 제6호 의안

- 법인 임원(외부추천이사) 임기 만료에 따른 선임의 건 : 원안대로 의결

7) 제7호 의안

- 법인 임원(감사) 임기만료에 따른 선임의 건 : 원안대로 의결

8) 제8호 의안

- 금강노인종합복지관(분관 금강노인문화센터) 운영규정(취업규칙) 개정(안) 건 : 원안대로 의결



9) 기타보고

■ 산하시설 경상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 경남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재운영 위탁사업 재계약(갱신) 추진 경과 보고 건

6. 성원보고 : 대표이사 이재경이 정관에 의거 성원이 되었음을 확인하고 개회를 선언하다.

7. 부의안 심의

제1호 의안 : 법인 및 산하시설 2026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마산노인일자리창출지원센터, 금강노인종합복지관, 금강노인문화센터,

경상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 경남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마산시니어클럽, 사회복지법인금강)

대표이사 : 원행스님 (이재경)

다음은 제1호 의안입니다. 법인 및 법인산하시설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를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 직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하다.

법인 사무국에서 마산노인일자리창출지원센터 2026년 1차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관하여 보고함.

마산노인일자리창출지원센터 2026년 기정예산은 일십삼억칠천육백사십구만칠천원(₩1,376,497,000)이며, 일억일천이백일십팔만칠천원(₩112,187,000) 증액하여 일십사억팔천팔백육십팔만사천원(₩1,488,684,000)으로 추가경정하고자 합니다. 세입의 세부예산을 살펴보면 보조금수입 항의 노인일자리보조금 목 계정 일십억삼천칠백일십일만이천원(₩1,037,112,000)에서 일억일천이백일십팔만육천팔백육십원(₩112,186,860) 증액하여 일십일억사천구백이십구만팔천팔백육십원(₩1,149,298,860), 잡수입 항의 잡수입 목 계정 일십오만원(₩150,000)에서 일백사십원(₩140) 증액하여 일십오만일백사십원(₩150,140)으로 변동되고, 세출의 세부예산을 살펴보면 노인일자리사업비 항의 노인일자리사업비 목 계정 일십억삼천칠백일십일만이천원(₩1,037,112,000)에서 일억일천이백일십팔만육천팔백육십원(₩112,186,860) 증액하여 일십일억사천구백이십구만팔천팔백육십원(₩1,149,298,860), 예비비 및 기타 항의 예비비 목 계정 육만오천원(₩65,000)에서 일백사십원(₩140) 증액하여 육만오천일백사십원정(₩65,140)으로 추가경정하고자 합니다.

금강노인종합복지관, 금강노인문화센터, 경상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 경남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마산시니어클럽 2026년 2차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관하여 보고함.

금강노인종합복지관 2026년 기정예산은 일십칠억사천삼백칠십이만육천원(₩1,743,726,000)이며, 팔백육십오만육천원(₩8,656,000) 증액하여 일십칠억오천이백삼십팔만이천원(₩1,752,382,000)으로 추가경정하고자 합니다. 세입의 세부예산을 살펴보면 보조금수입 항, 기타보조금 목의 기타외부보조 계정 삼천육백칠십오만육천원(₩36,756,000)에서 이백팔십만원(₩2,800,000) 감액하여 삼천삼백구십오만육천원(₩33,956,000), 보조금수입 항, 기타보조금 목의 인지특화봉사단 계정을 추가하여 이백팔십만원(₩2,800,000) 증액, 후원금수입 항, 지정후원금 목의 기타외부지정후원금 계정 오천만원(₩50,000,000)에서 이천원(₩2,000) 감액하여 사천구백구십구만팔천원(₩49,998,000), 지정후원금

목의 공동모금회-동행 계정 일천만원(₩10,000,000)에서 일천원(₩1,000) 증액하여 일천만일천원
 (₩10,001,000), 지정후원금 목의 국민연금수급자아카데미 계정 팔백만원(₩8,000,000)에서 일천원
 (₩1,000) 증액하여 팔백만일천원(₩8,001,000), 후원금수입 항, 비지정후원금 목의 비지정후원금
 계정 오천만원(₩50,000,000)에서 육백육십오만육천원(₩6,656,000) 증액하여 오천육백육십오만육천
 원(₩56,656,000), 비지정후원금 목의 비지정후원금(농협) 계정 일천오백만원(₩15,000,000)에서 이
 백만원(₩2,000,000) 증액하여 일천칠백만원(₩17,000,000), 잡수입 항, 기타예금이자수입 목의 예
 금이자-외부 계정 오만일천원(₩51,000)에서 일천원(₩1,000) 감액하여 오만원(₩50,000), 기타예금
 이자수입 목의 예금이자-봉사단 계정 팔천원(₩8,000)에서 일천원(₩1,000) 증액하여 구천원
 (₩9,000)으로 변동되고, 세출의 세부예산을 살펴보면 운영비 항, 공공요금 목의 공공요금 계정 오
 천구백만원(₩59,000,000)에서 사백만원(₩4,000,000) 증액하여 육천삼백만원(₩63,000,000), 제세
 공과금 목의 제세공과금 계정 일천이백삼십삼만원(₩12,330,000)에서 사백만원(₩4,000,000) 증액
 하여 일천육백삼십삼만원(₩16,330,000), 사업비 항, 운영사업비 목의 생계비-주식/부식 계정 이억
 이천오백칠십팔만이천원(₩225,782,000)에서 오백만원(₩5,000,000) 증액하여 이억삼천칠십팔만이
 천원(₩230,782,000), 운영사업비 목의 생계비-운영비 계정 오백만원(₩5,000,000)에서 일백만원
 (₩1,000,000) 증액하여 육백만원(₩6,000,000), 교육사업비 목의 사회교육강사로 계정 일억육천육
 십사만원(₩160,640,000)에서 이백오십육만육천원(₩2,566,000) 증액하여 일억육천삼백이십만육천
 원(₩163,206,000), 교육사업비 목의 사회교육운영비 계정 일천일백삼만원(₩11,030,000)에서 일백
 만원(₩1,000,000) 감액하여 일천삼만원(₩10,030,000), 재가복지사업비 목의 재가복지사업비 계정
 이천일백오십만원(₩21,500,000)에서 칠백구십일만원(₩7,910,000) 감액하여 일천삼백오십구만원
 (₩13,590,000), 건강증진사업비 목의 건강증진사업비 계정 사백만원(₩4,000,000)에서 일백만원
 (₩1,000,000) 증액하여 오백만원(₩5,000,000), 공동모금회-동행사업비 목의 공동모금회-동행 계정
 일천만원(₩10,000,000)에서 일천원(₩1,000) 증액하여 일천만일천원(₩10,001,000), 국민연금수급
 자 아카데미사업비 목의 국민연금수급자 아카데미 계정 팔백만원(₩8,000,000)에서 일천원(₩1,000)
 증액하여 팔백만일천원(₩8,001,000), 사업비 항, 인지특화봉사단사업비 목 추가, 봉사활동지원비-
 인지 계정을 추가하여 이백오십팔만칠천원(₩2,587,000) 증액, 인지특화봉사단사업비 목의 수행기
 관운영비-인지 계정을 추가하여 이십일만삼천원(₩213,000) 증액, 사업비 항, 기타외부보조사업비
 목의 기타외부보조사업 삼천육백칠십오만육천원(₩36,756,000)에서 이백팔십만원(₩2,800,000) 감액
 하여 삼천삼백구십오만육천원(₩33,956,000), 기타외부지정후원금사업비 목의 기타외부지정후원금
 계정 오천만원(₩50,000,000)에서 이천원(₩2,000) 감액하여 사천구백구십구만팔천원(₩49,998,000),
 예비비 및 기타 항, 반환금 목의 반환금-봉사단 계정 일만원(₩10,000)에서 일천원(₩1,000) 증액하
 여 일만일천원(₩11,000), 반환금 목의 반환금-외부 계정 이만육천원(₩26,000)에서 일천원
 (₩1,000) 감액하여 이만오천원(₩25,000)으로 추가경정하고자 합니다.

금강노인문화센터 2026년 기정예산은 오억육천사백삼십칠만팔천원(₩564,378,000)이며, 삼백사십삼
 만원(₩3,430,000) 증액하여 오억육천칠백팔십만팔천원(₩567,808,000)으로 추가경정하고자 합니다.
 세입의 세부예산을 살펴보면 사업수입 항, 이용료수입 목의 이용료수입 계정 일천팔백팔십이만원

(₩18,820,000)에서 이백오십만원(₩2,500,000) 증액하여 이천일백삼십이만원(₩21,320,000), 보조금 수입 항, 기타보조금 목의 재가노인식사배달지원사업 계정 오천일백오십사만칠천원(₩51,547,000)에서 구십삼만원(₩930,000) 증액하여 오천이백사십칠만칠천원(₩52,477,000), 후원금수입 항, 지정후원금 목의 외부지원사업 계정 육백만원(₩6,000,000)에서 삼백만원(₩3,000,000) 감액하여 삼백만원(₩3,000,000), 비지정후원금 목의 비지정후원금 계정 칠백만원(₩7,000,000)에서 삼백만원(₩3,000,000) 증액하여 일천만원(₩10,000,000)으로 변동되고, **세출의 세부예산을 살펴보면** 운영비 항, 수용비 및 수수료 목의 수용비 및 수수료 계정 일천삼백오십삼만일천원(₩13,531,000)에서 일백만원(₩1,000,000) 증액하여 일천사백오십삼만일천원(₩14,531,000), 차량비 목의 차량비 계정 오백팔십만사천원(₩5,804,000)에서 오십만원(₩500,000) 증액하여 육백삼십만사천원(₩6,304,000), 시설비 항, 시설장비유지비 목의 시설장비유지비 계정 육백만원(₩6,000,000)에서 오십만원(₩500,000) 증액하여 육백오십만원(₩6,500,000), 사업비 항, 운영사업비 목의 경로식당 주부식비 계정 삼천칠백삼십오만팔천원(₩37,358,000)에서 삼백오십만원(₩3,500,000) 증액하여 사천팔십오만팔천원(₩40,858,000), 외부지원사업비 목의 외부지원사업비 계정 칠백오십만원(₩7,500,000)에서 삼백만원(₩3,000,000) 감액하여 사백오십만원(₩4,500,000), 재가노인식사배달사업비 목의 식사배달 주부식비 계정 사천칠백일십육만원(₩47,160,000)에서 육십사만팔천원(₩648,000) 증액하여 사천칠백팔십만팔천원(₩47,808,000), 재가노인식사배달사업비 목의 식사배달 운영비 계정 사백삼십팔만칠천원(₩4,387,000)에서 이십팔만이천원(₩282,000) 증액하여 사백육십육만구천원(₩4,669,000),

으로 추가경정하고자 합니다.

경상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 2026년 기정예산은 육억구천팔백육십팔만원(₩698,680,000)이며, **세출의 세부예산을 살펴보면** 인건비 항, 급여 목의 급여 계정 사억육백사십육만원(₩406,460,000)에서 일백오십만원(₩1,500,000) 감액하여 사억사백구십육만원(₩404,960,000), 사업비 항, 사업비 목의 홍보사업비 계정 사백만원(₩4,000,000)에서 일백오십만원(₩1,500,000) 증액하여 오백오십만원(₩5,500,000)으로 추가경정하고자 합니다.

경남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2026년 기정예산은 삼억삼천오백삼십이만이천원(₩335,322,000)이며 이십사만원(₩240,000) 증액하여 삼억삼천오백오십육만이천원(₩335,562,000)으로 추가경정하고자 합니다. **세입의 세부예산을 살펴보면** 잡수입 항, 기타잡수입 목의 기타잡수입 계정 일백팔십만원(₩1,800,000)에서 이십사만원(₩240,000) 증액하여 이백사만원(₩2,040,000)으로 변동되고, **세출의 세부예산을 살펴보면** 인건비 항, 제수당 목의 주휴수당 계정 일천오백구십일만원(₩15,910,000)에서 일백오십만원(₩1,500,000) 감액하여 일천사백사십일만원(₩14,410,000), 운영비 항, 생계비 목의 생계비 계정 일천오백삼십만원(₩15,300,000)에서 이십사만원(₩240,000) 증액하여 일천오백오십사만원(₩15,540,000), 사업비 항, 사업비 목의 사업비 계정 이천삼십오만원(₩20,350,000)에서 일백오십만원(₩1,500,000) 증액하여 이천일백팔십오만원(₩21,850,000)으로 추가경정하고자 합니다.

마산시니어클럽 2026년 기정예산은 일백일십사억육천팔백삼십오만사천원(₩11,468,354,000)에서 일천이백이십만원(₩12,200,000) 증액하여 일백일십사억팔천오십오만사천원(₩11,480,554,000)으로 추

가경정하고자 합니다. **세입의 세부예산을** 살펴보면 보조금수입 항, 기타보조금 목의 노인일자리 계정 구십억이천사백칠십만팔천원(₩9,024,708,000)에서 일천이백이십만원(₩12,200,000) 증액하여 구십억삼천육백구십만팔천원(₩9,036,908,000)으로 변동되고, **세출의 세부예산을** 살펴보면 인건비 항, 인건비 목의 급여 계정 삼억이백이십만원(₩302,200,000)에서 사만칠천원(₩47,000) 감액하여 삼억이백일십오만삼천원(₩302,153,000), 제수당 목의 가족수당 계정 사백사십칠만원(₩4,470,000)에서 오십사만원(₩540,000) 증액하여 오백일만원(₩5,010,000), 제수당 목의 연차수당 계정 일백팔십사만사천원(₩1,844,000)에서 팔십삼만칠천원(₩837,000) 감액하여 일백만칠천원(₩1,007,000), 사회보험부담금 목의 건강보험부담금 계정 일천사백삼십만원(₩14,300,000)에서 팔십삼만원(₩830,000) 증액하여 일천오백일십삼만원(₩15,130,000), 사회보험부담금 목의 국민연금부담금 계정 일천칠백육십만원(₩17,600,000)에서 일백일십만원(₩1,100,000) 감액하여 일천육백오십만원(₩16,500,000), 사회보험부담금 목의 산재보험료 계정 삼백만원(₩3,000,000)에서 칠십사만삼천원(₩743,000) 감액하여 이백이십오만칠천원(₩2,257,000), 사회보험부담금 목의 고용보험부담금 계정 삼백오십만원(₩3,500,000)에서 육만원(₩60,000) 감액하여 삼백사십사만원(₩3,440,000), 운영비 항, 수용비 및 수수료 목의 수용비 및 수수료 계정 일천구백사십사만이천원(₩19,442,000)에서 칠백사십삼만팔천원(₩7,438,000) 증액하여 이천육백팔십팔만원(₩26,880,000), 공공요금 목의 공공요금 계정 일천만원(₩10,000,000)에서 이백삼십칠만일천원(₩2,371,000) 감액하여 칠백육십이만구천원(₩7,629,000), 차량비 목의 차량비 계정 일천사백팔십만원(₩14,800,000)에서 삼백육십오만원(₩3,650,000) 감액하여 일천일백일십오만원(₩11,150,000), 사업비 항, 노인일자리사업비 목의 노인일자리사업비 계정 일백이억이천오백일십칠만원(₩10,225,170,000)에서 일천이백이십만원(₩12,200,000) 증액하여 일백이억삼천칠백삼십칠만원(₩10,237,370,000)으로 추가경정하고자 합니다.

사회복지법인 금강 2026년 3차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관하여 보고함.

사회복지법인 금강 2026년 기정예산은 삼억팔천오백오십오만원(₩385,550,000)이며, **세입의 세부예산을** 살펴보면 후원금수입 항, 비지정후원금 목의 비지정후원금 계정 오천오백만원(₩55,000,000)에서 일백만원(₩1,000,000) 증액하여 오천육백만원(₩56,000,000), 잡수입 항, 기타잡수입 목의 기타잡수입 계정 이억이만원(₩200,020,000)에서 일백만원(₩1,000,000) 감액하여 일억구천구백이만원(₩199,020,000)으로 변동되고, **세출의 세부예산을** 살펴보면 인건비 항, 사회보험 부담금 목의 국민연금부담금 계정 일백칠십일만원(₩1,710,000)에서 오만원(₩50,000) 감액하여 일백육십육만원(₩1,660,000), 사회보험 부담금 목의 고용보험부담금 계정 삼십오만원(₩350,000)에서 오만원(₩50,000) 증액하여 사십만원(₩400,000), 운영비 항, 제세공과금 목의 제세공과금 계정 삼백오십만원(₩3,500,000)에서 이백오십만원(₩2,500,000) 증액하여 육백만원(₩6,000,000), 기타운영비 목의 기타운영비 계정 이천이백이십구만원(₩22,290,000)에서 삼백만원(₩3,000,000) 증액하여 이천오백이십구만원(₩25,290,000), 일반사업비 항, 사업비 목의 사업비 계정 일억육천삼백구십육만구천원(₩163,969,000)에서 오백오십만원(₩5,500,000) 감액하여 일억오천팔백사십육만구천원(₩158,469,000)으로 추가경정하고자 합니다.

대표이사 : 원행스님 (이재경)

제1호 의안 자료를 살펴보시고 이사님들의 좋은 의견과 동의, 재청을 부탁드립니다. 라고 말하다
이 사 : 원타스님 (신의수)

각 산하시설 추경자료는 잘 봤습니다. 연말까지 차질없이 예산집행이 가능하도록 담당자들은
각별히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은 원안대로 동의합니다. 라고 말하다.

이 사 : 원당스님 (장준철), 원택스님 (여무의), 정영건, 오정옥

원안대로 동의합니다. 라고 말하다.

이 사 : 원여스님 (김윤현), 광인철

재청합니다. 라고 말하다.

대표이사 : 원행스님 (이재경)

원타스님, 원당스님, 원택스님, 정영건, 오정옥이사님께서 동의해 주셨고, 원여스님, 광인철이사
님께서 재청해 주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1호 의안 법인 및 산하시설 2026년 세입,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다.

제2호 의안 : 사회복지법인금강 정관 조문 일부 변경(안) 재의결의 건 심의

대표이사 : 원행스님 (이재경)

제2호 의안 사회복지법인금강 정관 조문 일부 변경(안) 재의결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에서는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하다.

법인사무국에서 법인의 목적사업 및 자산구분 등에 관한 정관 조항을 관계 법령과 현행 법인
운영내용에 맞게 정비하기 위하여 2026년 1월 개최한 이사회에서 정관 일부 변경안을 의결한
바 있으나, 창원시에 정관변경 인가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일부 관계 법령의 근거 조항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는 사항이 확인되어 반려되었음을 설명하다.

이에 창원시의 검토사항을 반영하여 잘못 인용된 법령 및 조항을 현행 법령에 맞게 정정하고,
정관 제5조의 자산구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정관 일부 변경안을 다시 심의·의결하고자 본 안
건을 상정하였음을 설명하다.

주요 변경 내용은 다음과 같음.

제1조(목적): 「영유아보육법」 관련 조문 번호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법적 근거를 현행화함.

제4조(사업의 종류): 영유아보육시설 운영 관련 법령 조문 현행화, 노인일자리창출지원센터 및
노인일자리 관련 사업의 근거 법령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내용에
맞게 수정함.

제5조(자산구분): 정관 조문 현행화함.

본 변경은 법인의 기본재산 관리구분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함.

▷신.구조문 대비표

변경 전 정관 조문	변경 후 정관 조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인은 대한 불교 조계종 종지종통을 봉체하며 사회복지사업법 규정과 영유아보육법 제13조에 의한 보육시설 설치운영과 노인복지법 제31조에 의한 노인복지사업을 운영하여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의 종류)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수행한다. ①『영유아보육법 제13조』영유아보육시설 운영 ②(생략) ③(생략) ④『노인복지법시행령 제17조의3』노인일자리창출지원센터 운영 ⑤『노인복지법시행령 제17조의3』시니어클럽 외 노인일자리 관련사업 운영 ⑥(생략) ⑦(생략) 제5조(자산구분) ① 이 법인의 자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되 기본 재산은 목적사업용 기본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②(생략) ③(생략) ④(생략)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인은 대한 불교 조계종 종지종통을 봉체하며 사회복지사업법 규정과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의한 보육시설 설치운영과 노인복지법 제31조에 의한 노인복지사업을 운영하여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내용변경) 제4조(사업의 종류)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수행한다. ①『영유아보육법 제10조』영유아보육시설 운영 (내용변경) ②변경전과 동일 ③변경전과 동일 ④『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노인취업알선기관 노인일자리창출지원센터 운영 (내용변경) ⑤『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노인일자리지원기관 시니어클럽 외 노인일자리 관련사업 운영 (내용변경) ⑥변경전과 동일 ⑦변경전과 동일 제5조(자산구분) ① 이 법인의 자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되 기본재산은 목적사업용 기본재산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내용변경) ②(생략) ③(생략) ④(생략)

대표이사 : 원행스님 (이재경)

이번 정관 변경안은 지난 2026년 1월 이사회에서 의결한 정관 변경내용에 대하여 관할 행정기관의 검토 과정에서 확인된 관계 법령 및 인용 조항의 오류를 바로잡아 현행 법령에 맞도록 정비하고, 법인의 자산구분을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료를 살펴보시고 이사님들의 좋은 의견과 동의를 부탁드립니다. 라고 말하다.

이 사 : 원택스님 (여무의)

지난 이사회에서 정관변경의 필요성과 취지에 대해서는 이미 심의한 사항이며, 이번에는 관할 행정기관에서 지적한 법령 조항을 현행 법령에 맞게 수정하여 재의결하는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라고 말하다.

법인사무국 :

이번 정관변경은 기존에 의결한 정관변경의 기본 취지를 유지하면서 행정기관의 검토 및 반려 사항을 반영하여 관계 법령과 조문을 정확하게 정비한 후 다시 인가를 신청하기 위한 것입니다. 라고 설명함.

이 사 : 오정옥

향후 정관이나 제규정을 개정할 경우 관계 법령의 제.개정 여부와 조문번호 등을 사전에 면밀히 확인하여 동일한 사유로 재심의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을거 같습니다. 이번안에 동의합니다. 라고 말하다.

이 사 : 원여스님 (김운현), 원택스님 (여무의), 정영건, 곽인철

동의합니다. 라고 말하다.

이 사 : 원당스님 (장준철), 원타스님 (신의수)

재청합니다. 라고 말하다.

대표이사 : 원행스님 (이재경)

오정옥이사님, 원여스님, 원택스님, 정영건, 곽인철이사님께서 동의하셨고, 원당스님, 원타스님께서 재청하셨음을 확인하며,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호 의안 사회복지법인금강 정관 조문 일부 변경(안) 재의결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다.

제3호 의안 : 법인 임원(정영건 이사) 사임의 건 심의

대표이사 : 원행스님 (이재경)

제3호 의안인 법인 임원(정영건 이사) 사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현재 정영건 이사의 임기는 2027년 11월 19일까지로 아직 임기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법인의 다른 이사들의 임기가 대부분 2026년 10월 19일자로 만료될 예정인 반면, 정영건 이사의 임기 종료시점만 달라 임원 선임과 변경보고, 등기 등 관련 행정절차를 별도로 진행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향후 법인 이사들의 임기를 동일한 시기에 관리하고 임원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정영건 이사가 현 이사직에서 자진 사임하고자 하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에 대한 이사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라고 말하다.

이 사 : 원택스님 (여무의)

정영건 이사님의 임기가 2027년 11월까지로 아직 1년 이상 남아 있는 상황인데, 이번 사임에 특별한 개인적 사정이 있는 것은 아니며, 다른 이사들과 임기를 맞추기 위한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말하다.

법인사무국 :

그렇습니다. 정영건 이사님 이사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거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사임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정영건 이사님의 임기만 다른 이사들과 약 1년 정도 차이가 있어 향후에도 임원 변경과 관련된 행정절차가 서로 다른 시기에 반복될 수 있습니다. 이를 이번 기회에 정리하여 임기를 통일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라고 설명함.

이 사 : 오정옥

법인에서는 임원 변경이 있을 때마다 행정기관 보고나 등기 등 여러 절차가 수반되기 때문에 임기를 일정하게 관리하면 행정적으로도 효율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무엇보다 정영건 이사님의 자발적인 의사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다.

이 사 : 정영건

앞에서 언급하신 것처럼 이번에 함께 임기를 정리하는 것이 향후 법인의 임원 관리나 행정적인 측면에서도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기에 자진 사임하고자 합니다. 라고 말하다.

이 사 : 원여스님 (김윤현)

본인이 충분히 내용을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사임 의사를 밝힌 것이라면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후 다시 이사로 선임될 경우 다른 이사들과 동일한 임기로 운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봅니다. 라고 말하다.

이 사 : 박인철

정영건 이사님께서 충분히 숙고하여 자진 사임 의사를 밝히셨고, 법인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되므로 사임을 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라고 말하다.

이 사 : 원당스님 (장준철)

저도 동의합니다. 다만 회의록에는 개인적인 사유가 아니라 이사들의 임기를 통일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자발적인 사임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기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다.

대표이사 : 원행스님 (이재경)

좋습니다. 정영건 이사께서 직접 자진 사임 의사를 밝혔고 이사님들도 법인 임원 임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사임을 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정영건 이사의 현 임기는 2027년 11월 19일까지이나, 본인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2026년 10월 19일자로 이사직에서 사임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동의와 재청 바랍니다. 라고 말하다.

이 사 : 원타스님(신의수), 원여스님(김윤현), 원택스님(여무의) 오정옥, 박인철

동의합니다. 라고 말하다.

이 사 : 원당스님 (장준철)

재청합니다. 라고 말하다.

대표이사 : 원행스님 (이재경)

저를 포함한 원타스님, 원여스님, 원택스님, 오정옥, 박인철이사님께서 동의하셨고, 원당스님께서 재청하셨음을 확인하며,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호 의안 법인 임원(정영건 이사) 사임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다.

제4호 의안 : 법인 임원(정영건 이사) 재선임의 건 심의

대표이사 : 원행스님 (이재경)

다음은 제4호 의안인 정영건 이사 재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앞서 제3호 의안에서 정영건 이사가 법인 이사들의 임기를 통일하여 관리하기 위한 취지로 2026년 10월 19일자로 현 이사직에서 사임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이번 사임은 이사직 수행상의 문제나 결격사유에 따



른 것이 아니라 임기 조정을 위한 것이므로 법인 운영의 연속성과 기존 이사로서의 경험을 고려하여 정영건 이사를 다시 이사로 선임하고, 다른 이사들과 새로운 임기를 동일하게 운영하고 자 합니다. 라고 말하다.

이 사 : 원택스님 (여무의)

제3호 의안에서 2026년 10월 19일자로 사임하는 것으로 의결했으니, 이번에 재선임될 경우 새로운 임기는 10월 20일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라고 말하다.

법인사무국 :

그렇습니다. 정관 제18조에서 이사의 임기를 3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선임할 경우 임기는 다른 이사님들과 동일하게 2026년 10월 20일부터 2029년 10월 19일까지 3년으로 하고자 합니다. 라고 말하다.

이 사 : 오정옥

정영건 이사께서는 현재까지 법인의 이사로서 활동해 왔고 법인의 운영상황과 주요 사업에 대한 이해도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임 자체도 임기를 통일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사로 다시 선임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봅니다. 라고 말하다.

이 사 : 원당스님 (장준철)

특히 이번 재선임을 통해 정영건 이사의 임기가 다른 이사들과 동일하게 2029년 10월 19일까지로 맞춰지기 때문에 처음에 이야기했던 임원 관리의 효율성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하다.

대표이사 : 원행스님 (이재경)

그럼 정영건 이사를 사회복지법인 금강의 이사로 재선임하고, 새로운 임기는 다른 이사들과 동일하게 2026년 10월 20일부터 2029년 10월 19일까지 3년으로 하는 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정관 제29조에서는 임원 선임에 있어서 자신에 관한 사항은 해당 이사가 의결에 참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영건 이사께서는 본인의 재선임에 관한 심의·의결에는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다른 이사님들의 동의와 재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하다.

이 사 : 원타스님(신의수),원택스님(여무의),원당스님(장준철),오정옥,곽인철
동의합니다. 라고 말하다.

이 사 : 원여스님 (김운현)

재청합니다. 라고 말하다.

대표이사 : 원행스님 (이재경)

저를 포함한 원타스님, 원택스님, 원당스님, 오정옥, 곽인철이사님께서 동의하셨고, 원여스님께서 재청하셨음을 확인하며,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4호 의안 법인 임원(정영건 이사) 재선임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다.

제5호 의안 : 법인 임원(대표이사, 이사) 임기 만료에 따른 선임의 건 심의

대표이사 : 원행스님 (이재경)



다음은 제5호 의안인 법인 임원 대표이사 및 이사 임기 만료에 따른 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사무국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하다.

법인사무국에서 안건에 대해 설명함.

현재 대표이사 원행스님을 비롯하여 원택스님, 원타스님, 원여스님, 원당스님, 박인철 이사님 총 6명의 임기가 2026년 10월 19일자로 만료될 예정입니다. 법인 정관 제18조에 따라 대표이사 및 이사의 임기는 3년이며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오늘 이사회에서 향후 3년간 법인의 운영과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할 이사님들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 사 : 정영건

사회복지법인은 단순히 개별 시설만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 차원에서 여러 시설의 사업과 예산, 조직 운영 등을 지속적으로 살펴봐야 하기 때문에 기존 이사들의 경험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한 결격사유나 직무수행상의 문제가 없다면 기존 이사들이 계속해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법인의 안정적인 운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라고 말하다.

이 사 : 오정옥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법인 산하시설마다 수행하는 사업이 다양하고 앞으로도 검토해야 할 현안이 계속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그동안 법인 운영에 참여해 온 이사들이 기존 경험을 바탕으로 주요 사안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하다.

이 사 : 박인철

재선임이라고 해서 기존 운영방식을 단순히 유지한다는 의미보다는,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변화하는 사회복지 환경에 맞추어 법인과 시설의 발전 방향을 계속 고민하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하다.

대표이사 : 원행스님 (이재경)

여러 이사님들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이번 재선임은 단순히 기존 임원의 임기를 연장하는 의미가 아니라 앞으로 3년 동안 법인의 주요 사업과 산하시설 운영에 대한 책임 있는 의사결정을 계속 맡아주시는 의미가 있습니다.

아울러 저 역시 대표이사 및 이사 임기가 2026년 10월 19일자로 종료됩니다. 정관 제16조에 따라 대표이사도 이사회에서 선출하도록 되어있으므로 차기 대표이사 선임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라고 말하다.

이 사 : 오정옥

원행스님께서서는 그동안 대표이사로서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제반 업무를 총괄해 오셨으며, 법인과 산하시설의 운영상황을 충분히 파악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인 운영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고려하면 차기 임기에도 대표이사직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하다.

이 사 : 원택스님 (여무의)

저도 동의합니다. 대표이사가 변경될 경우 법인의 대외업무나 산하시설과의 업무 연계에도 변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현재 법인의 운영상황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원행스님께서 계속해



서 대표이사의 역할을 맡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다.

감 사 : 김명희

다만 정관 제29조에 따라 본인의 임원 선임에 관한 사항에는 해당 임원이 의결에 참여할 수 없으므로, 원행스님의 이사 및 대표이사 재선임 의결 시에는 원행스님이 의결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다.

대표이사 : 원행스님 (이재경)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저를 포함하여 각 후보자는 본인의 선임에 관한 의결에는 참여하지 않고, 후보자별로 각각 의결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다.

원행스님은 본인의 이사 및 대표이사 재선임에 관한 사항이므로 해당 심의의결에 참여하지 아니하다.

이 사 : 오정옥

원행스님께서서는 현재까지 대표이사로서 법인의 업무를 총괄하고 산하시설의 운영 전반을 살펴왔습니다. 법인의 주요 현안과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법인 운영의 연속성을 고려할 때 이사와 대표이사로 다시 선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며, 동의합니다. 라고 말하다.

이 사 : 정영건

동의합니다. 앞으로도 법인의 목적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산하시설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대표이사 역할을 계속 맡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하다.

의결에 참여할 수 있는 출석이사들(원택스님, 원타스님, 원여스님, 원당스님, 오정옥, 정영건, 박인철)이 원행스님의 이사 및 대표이사 재선임에 관하여 심의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다.

대표이사 : 원행스님 (이재경)

다음은 원택스님 이사 재선임입니다. 라고 말하다.

이 사 : 원타스님 (신의수)

원택스님께서서는 기존 임기 동안 법인의 주요 안건에 대한 심의와 의사결정에 지속적으로 참여해 왔으며 법인의 설립목적과 운영방향에 대한 이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하다.

이 사 : 박인철

앞으로도 법인의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지속적으로 참여하여 법인과 산하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에 역할을 해주시기를 바라며 재선임에 동의합니다. 라고 말하다.

의결에 참여할 수 있는 출석이사들(원행스님, 원타스님, 원여스님, 원당스님, 오정옥, 정영건, 박인철)이 심의한 결과 원택스님을 이사로 재선임하는 안을 원안대로 가결하다.

대표이사 : 원행스님 (이재경)

다음은 원타스님 이사 재선임입니다. 라고 말하다.

이 사 : 오정옥

원타스님께서도 그동안 이사로서 법인의 주요 현안과 운영사항을 함께 살펴왔고, 법인의 사업과 운영방향에 대한 이해가 높은 만큼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사직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하다.

이 사 : 원여스님 (김윤현)

특별한 결격사유나 직무수행상의 문제가 없고 이사로서 역할을 계속 수행할 의사가 있다면 재선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다.

의결에 참여할 수 있는 출석이사들(원행스님, 원택스님, 원여스님, 원당스님, 오정옥, 정영건, 광인철)이 심의한 결과 원타스님을 이사로 재선임하는 안을 원안대로 가결하다.

대표이사 : 원행스님 (이재경)

다음은 원여스님 이사 재선임입니다. 라고 말하다.

이 사 : 정영건

원여스님께서서는 현재까지 이사로서 법인의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해 왔으며 법인 운영에 대한 이해도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법인 운영의 연속성을 위해 다시 선임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라고 말하다.

이 사 : 원당스님 (장준철)

앞으로도 이사회 주요 안건을 충분히 검토하고 법인의 목적사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계속 역할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하다.

의결에 참여할 수 있는 출석이사들(원행스님, 원택스님, 원타스님, 원당스님, 오정옥, 정영건, 광인철)이 심의한 결과 원여스님을 이사로 재선임하는 안을 원안대로 가결하다.

대표이사 : 원행스님 (이재경)

다음은 원당스님 이사 재선임입니다. 라고 말하다.

이 사 : 오정옥

원당스님 역시 기존 임기 동안 법인 이사로서 주요 안건의 심의·의결에 참여해 왔습니다. 법인 운영의 안정성과 이사회 구성의 연속성을 고려할 때 계속해서 이사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하다.

이 사 : 광인철

기존 임기 동안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법인의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하다.

의결에 참여할 수 있는 출석이사들(원행스님, 원택스님, 원타스님, 원여스님, 오정옥, 정영건, 광인철)이 심의한 결과 원당스님을 이사로 재선임하는 안을 원안대로 가결하다.

대표이사 : 원행스님 (이재경)

다음은 광인철 이사 재선임입니다. 라고 말하다.

이 사 : 정영건

곽인철 이사께서도 현재까지 법인의 주요 사항을 함께 심의하고 법인과 산하시설 운영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왔습니다. 법인 운영에 대한 이해와 기존 활동 경험을 고려하면 다시 선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라고 말하다.

이 사 : 원택스님 (여무의)

기존 이사진과 함께 법인의 운영 연속성을 유지하고 앞으로 발생하는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다.

의결에 참여할 수 있는 출석이사들(원행스님, 원택스님, 원타스님, 원여스님, 원당스님, 오정옥, 정영건)이 심의한 결과, 곽인철을 이사로 재선임하는 안을 원안대로 가결하다.

대표이사 : 원행스님 (이재경)

네. 감사합니다. 심의·의결한 결과 총6명(원행스님, 원택스님, 원타스님, 원여스님, 원당스님, 곽인철)을 이사로 재선임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습니다. 재선임되는 이사들의 새로운 임기는 현재 임기가 만료되는 다음 날인 2026년 10월 20일부터 2029년 10월 19일까지 3년입니다. 또한 사회복지법인 금강의 대표이사로 같은 기간 동안 재선임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다.

제6호 의안 : 법인 임원(외부추천이사) 임기 만료에 따른 선임의 건 심의

대표이사 : 원행스님 (이재경)

제6호 의안 법인 임원(외부추천이사) 임기 만료에 따른 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법인의 외부추천이사로 활동하고 있는 오정옥 이사, 조영순 이사, 주용수 이사 세 분의 임기가 2026년 10월 19일자로 만료될 예정입니다. 법인 정관 제16조에 따르면 이사 정수의 3분의 1 이상은 시·도사회보장위원회 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 의결을 거쳐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법인의 이사 정수가 10명이므로 세 분 이상의 추천이사를 두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법인에서는 창원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해 차기 추천이사 후보자 추천 절차를 진행하였으며, 추천된 후보자 명단에 현재 추천이사인 오정옥, 조영순, 주용수 이사가 다시 포함되어 있어 선임 여부를 심의하고자 합니다. 라고 말하다.

법인사무국에서 설명함.

현재 임기가 2026년 10월 19일자로 종료되므로 새로운 임기에 대해서는 다시 추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창원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추천한 후보자 명단에 세 분 모두 포함되어 있어, 오늘 이사회에서 각 후보자의 선임 여부를 최종적으로 의결하고자 하는 것임을 설명함.

이 사 : 원타스님 (신의수)

세 분 모두 서로 다른 영역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인 내부의 시각만으로 운영하는 것보다 사회복지 교육과 현장의 경험을 가진 분들이 이사회에 참여하

여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법인 운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저는 동의 합니다. 라고 말하다.

이 사 : 원당스님 (장준철)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특히 추천이사는 외부의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시각을 이사회에 반영하는 역할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에도 세 분이 법인의 운영과 주요 안건을 충분히 이해하고 참여해 왔기 때문에 다시 선임할 경우 업무의 연속성도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동의합니다. 라고 말하다.

이 사 : 광인철

오정옥 이사는 교육 및 연구 경험이 있고, 조영순 이사와 주용수 이사는 실제 노인복지 현장의 운영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법인의 주요 안건을 검토하는 데 서로 보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 라고 말하다.

이 사 : 원여스님 (김윤현)

기존 이사회에서도 현장의 입장에서 의견을 제시해 왔기 때문에 계속해서 역할을 맡아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 라고 말하다.

대표이사 : 원행스님 (이재경)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외부추천이사는 단순히 정관상 정수를 충족하는 의미뿐 아니라 외부의 전문적인 의견을 법인 운영에 반영하는 역할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분 모두 기존 임기 동안 이사회에 참여해 왔고 법인의 운영상황에 대한 이해도도 갖추고 있는 만큼 선임 여부를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다.

의결에 참여할 수 있는 출석이사들(원행스님, 원택스님, 원타스님, 원여스님, 원당스님, 광인철, 정영건)이 심의한 결과 오정옥, 조영순, 주용수 세 분을 외부추천이사로 선임하는 안을 원안대로 가결하다.

제7호 의안 : 법인 임원(감사) 임기 만료에 따른 선임의 건 심의

대표이사 : 원행스님 (이재경)

제7호 의안인 임기만료에 따른 감사 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현재 법인의 감사로 활동하고 있는 김을섭 감사와 김명희 감사의 임기가 2026년 10월 31일자로 만료될 예정입니다. 이에 두 분의 임기만료에 따라 차기 감사 선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자 합니다. 라고 말하다.

이 사 : 원택스님 (여무의)

현재 김을섭 감사와 김명희 감사 두 분 모두 다시 선임하는 안으로 올라온 것입니까? 라고 말하다.

대표이사 : 원행스님 (이재경)

그렇습니다. 두 분 모두 현재까지 법인의 감사로서 역할을 수행해 왔고, 감사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다시 선임하고자 합니다. 라고 말하다.

이 사 : 정영건

김을섭 감사의 경우 세무사이기 때문에 회계나 세무 분야를 전문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감사 역할에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동의합니다. 라고 말하다.

이 사 : 원택스님 (여무의)

사회복지법인이나 시설은 예산과 보조금, 후원금 등 회계 관련 사항이 중요하기 때문에 세무 분야 전문가가 감사로 참여하고 있다는 것은 법인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라고 말하다.

이 사 : 원여스님 (김윤희)

김명희 감사께서도 그동안 활동하면서 법인의 설립 취지와 운영 방향을 잘 이해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인의 내부 사정과 목적사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감사 역할을 계속 수행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하다.

이 사 : 광인철

저도 두 분의 재선임에 동의합니다. 한 분은 회계·세무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다른 한 분은 법인의 운영과 목적에 대한 이해를 갖추고 있어 서로 보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하다.

대표이사 : 원행스님 (이재경)

두 분의 전문성과 기존 감사활동 경험을 고려하여 재선임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으로 이해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두 분 감사님의 재선임 여부를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다.

출석이사들(원행스님, 원택스님, 원타스님, 원여스님, 원당스님, 광인철, 정영건, 오정옥)이 심의한 결과 김을섭, 김명희 두 분을 감사로 재선임하는 안을 원안대로 가결하다.

제8호 의안 금강노인종합복지관(분관 금강노인문화센터) 운영규정(취업규칙) 개정(안) 건 심의

대표이사 : 원행스님 (이재경)

다음은 제8호 의안인 금강노인종합복지관(분관 금강노인문화센터) 운영규정(취업규칙) 개정(안)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사무국에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하다.

법인사무국에서 금강노인종합복지관(분관 금강노인문화센터) 운영규정(취업규칙) 개정(안)에 관하여 보고함.

▷운영규정 개정(안)

구분	변경전	개정(안)
운영규정 제16장 사용자 운영규정	제132조 (이용의 제한) (추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즉시 퇴장 조치 할 수 있다. 1. 전염성 질환이 있음이 확인된 사람. 2. 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는 사람. 3. <u>이용시설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 (음주</u>	제 132 조 (이용의 제한 및 징계) 1.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즉시 퇴장 조치 할 수 있다. ① 전염성 질환이 있음이 확인된 사람. ② 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는 사람. ③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질서 문란 행위를 한 사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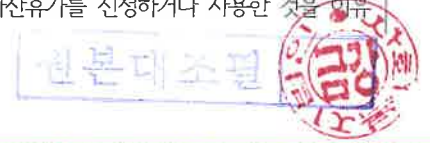


구분	변경전	개정(안)
	도박, 싸움 등) (수정 및 추가③) 4. 시설 이용허가 없이 상업적 행위 등을 하는 사람 및 단체. (추가④) 5. 회원증을 타인에게 대여 및 도용하여 사용하거나 이용규정 (이용수칙, 안전 수칙 등)을 위반한 자 (수정⑤⑥) 6. 기타 복지관에서 이용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회원 (수정⑧) 7. 동 시간대 인원이 이용정원을 초과하는 경우 (복지관 1,000명, 문화센터 500명) (수정⑨)	가. 음주, 흡연, 도박 등 불건전 행위 나. 고성방가, 폭언, 욕설, 위협, 협박 행위 다. 이용자·직원·강사·자원봉사자 및 복지관 이용 관련 방문자 등에 대한 폭행,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등 인권침해 행위 ④ 시설의 허가 없이 상업적 행위, 물품판매, 종교 및 정치활동 등을 하는 사람 및 단체 ⑤ 회원증을 타인에게 대여 및 도용하거나 부정 사용한 사람 ⑥ 복지관 시설 및 비용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훼손하거나 절도한 사람 ⑦ 이용시간 독점, 텃세, 자리 선점, 이용자 간 분쟁 유발 등 공동 이용 질서를 저해 하는 사람 ⑧ 기타 복지관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되는 사람 ⑨ 정원을 초과하여 안전관리가 어려운 경우 2. 1항에 해당하는 이용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단계별 이용제한(징계)을 할 수 있다. ① 경고 ② 이용정지 1개월 ③ 이용정지 3개월 ④ 이용정지 6개월 ⑤ 회원자격 정지 1년 ⑥ 회원자격 제명

구분	변경전	개정(안)
운영규정 제16장 이용자 운영규정		3. 징계 기준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① 이용정지 1개월 가. 회원증 대여 및 부정사용 나. 음주, 흡연, 도박, 상행위 등 경미한 규정 위반 다. 이용수칙 반복 위반(경고 후 재발 시) ② 이용정지 3개월 가. 폭언, 욕설, 위협, 협박 행위 나. 성희롱 및 부적절한 신체접촉 다. 승인 없는 금품수수 및 단체활동 라. 시설물 훼손(원상복구 병행) 마. 전염성 질환 발생 시(완치 후 이용 가능) ③ 중징계(6개월 이상 ~ 제명) 가. 폭행, 성폭력 등 중대한 인권침해 나. 동일 위반행위 반복 다. 복지관 명예 훼손 및 운영 방해 라. 법적 처벌 대상 행위 4. 징계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다. 5.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즉시 제명 또는 이용제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① 법원의 판결 또는 수사기관 조치가 있는 경우 ② 긴급하게 이용자의 안전 확보가 필요한 경우 ③ 중대한 폭행, 성폭력 등 즉각적인 이용자 안전 위협이 있는 경우

▷ 취업규칙 개정(안)

구분	변경전	개정(안)
취업규칙 제5장 근로조건 제3절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지원	배우자 유산사산에 관한 규정 없음 (신설)	제 45조의 2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1. 복지관은 직원의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해당 직원이 휴가를 신청하면 5일의 범위에서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를 부여한다. 2. 제1항에 따른 휴가기간 중 최초 3일은 유급으로 하고, 나머지 2일은 무급으로 한다. 3. 배우자 유산사산휴가의 신청 시기, 신청 방법 및 증빙서류 등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복지관은 직원이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고용보험 관계 법령에 따라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확인서 등 필요한 서류를 제공한다. 5. 복지관은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를 신청하거나 사용한 것을 사유



구분

변경전

개정(안)

제51조(육아휴직)

1. 복지관은 만 8세 이하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가진 직원이 그 영유아의 양육을 위하여 휴직 (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 허용한다. (추가)
2.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분할 사용할 수 있다.(추가)
3. 복지관은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으며 육아휴직 동안은 당해 직원을 해고할 수 없다.(유지)
4. 복지관은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고용보험법령이 정하는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증빙서류를 제공하는 등 적극 협조한다. (수정 및 추가)
5.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반드시 포함한다.

(유지)

6~8. 단기 육아 휴직 관련 규정 없음(신설)

로 해당 직원을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않는다.

제51조(육아휴직)

1. 복지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원이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한다.
 - ① 임신 중인 여성 직원이 모성보호를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 ②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 ③ 남성 직원이 유산·조산 등의 위험이 있는 임신 중인 배우자를 돌보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2. 육아휴직은 자녀 1명당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사용할 수 있다.
3. 복지관은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으며 육아휴직 동안은 당해 직원을 해고할 수 없다.
4. 복지관은 육아휴직급여 신청에 필요한 서류 제공 등에 협조하며, 육아휴직의 신청방법과 절차 등은 관계 법령에 따른다.
5.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반드시 포함한다.
6. 복지관은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휴원·휴교·방학·질병·사고로 인한 입원 등 단기 돌봄이 필요한 경우 연 1회, 1주 또는 2주의 단기 육아휴직을 허용한다.
7. 단기 육아휴직 사용기간은 전체 육아휴직 기간에서 차감하되, 육아휴직 분할사용 횟수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8. 방학기간에 신청이 집중되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직원과 협의하여 사용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대표이사 : 원행스님(이재경)

제8호 의안에 관하여 살펴보시고 이사님들의 좋은 의견과 동의,재청 부탁드립니다. 라고 말한다.

이 사 : 정영건

이용정지나 제명과 같이 이용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사항은 신중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한다.

법인사무국 :

네. 징계는 사안의 경중과 반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중대한 폭행이나 성폭력 등 즉각적인 안전 위협이 있는 경우에는 이용자와 종사자의 안전을 우선하여 즉시 이용제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라고 말한다.

이 사 : 오정옥

복지관 이용자가 많은 만큼 직원 개인의 판단에 의존하기보다는 이렇게 기준을 명확하게 정해두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라고 말한다.

법인사무국 :

네. 이용자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목적보다는 이용자와 종사자를 보호하고, 동일한 사안에 일관된 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라고 말하디.

이 사 : 원여스님 (김윤현)

직원의 권리를 보장하면서도 기관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조정할 수 있는 내용이 함께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라고 말한다.

대표이사 : 원행스님(이재경)

원본대조필



운영규정 및 취업규칙 개정안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동의와 재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하다.

이 사 : 원택스님 (여무의), 원타스님 (신의수), 원당스님 (장준철), 정영건, 곽인철, 오정옥 동의합니다. 라고 말하다.

이 사 : 원여스님 (김윤현)

재청합니다. 라고 말하다.

대표이사 : 원행스님(이재경)

원택스님, 원타스님, 원당스님, 정영건, 곽인철, 오정옥이사님께서 동의해 주셨고, 원여스님께서 재청해 주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8호 의안인 금강노인종합복지관(분관 금강노인문화센터) 운영규정(취업규칙) 개정(안) 심의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다.

기타보고 : 산하시설 경상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 경남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재운영 위탁사업 재계약(갱신) 추진 경과 보고

대표이사 : 원행스님(이재경)

다음 기타보고입니다. 법인 산하시설인 경상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 및 경남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의 재운영 위탁사업 재계약(갱신)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관련 내용을 사무국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하다.

법인사무국에서 기타보고 내용을 보고함.

현재 우리 법인이 경상남도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경상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 및 경남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의 위탁기간은 202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경상남도에서 2026년 9월 중순 재운영 위탁사업 재계약(갱신)과 관련한 공문이 해당 시설로 통보되었으며, 이에 따라 현재 경상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 및 경남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에서는 재계약에 필요한 관련 서류 준비 및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라고 보고함.

이 사 : 원택스님 (여무의)

이번 재계약은 공개모집 방식이 아니라 기존 수탁법인과 계약 갱신 절차로 진행되는 것입니까? 라고 말하다.

법인사무국 :

현재 경상남도에서 안내한 절차에 따라 기존 수탁법인의 재운영을 위한 재계약(갱신)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설에서는 경상남도에서 요구한 운영실적 및 향후 사업계획 등 관련 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다.

이 사 : 오정옥

재계약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특별한 변경사항이나 운영상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없습니까? 라고 말하다.

법인사무국 :

현재까지는 경상남도에서 안내한 재계약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며, 향후 심사 및 협의 과정에서 위탁기간, 운영조건 등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법인에 별도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다.

이 사 : 객인철

경상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과 경남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는 노인학대 예방과 피해노인 보호를 담당하는 전문시설인 만큼 사업의 연속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의 운영성과를 잘 정리하여 재계약 절차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하다.

대표이사 : 원행스님(이재경)

경상남도에서 시행한 재운영 위탁사업 재계약(갱신) 관련 공문에 따라 두 시설에서 현재 재계약 절차를 진행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향후 재계약 결과 및 주요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이사회에 다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보고 내용에 다른 의견없으신가요? 라고 말하다.

이사 일동 :

이의 없습니다. 라고 말하다.

대표이사 : 원행스님(이재경)

이상으로 경상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 및 경남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재운영 위탁사업 재계약(갱신) 추진 경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라고 말하다.

대표이사 : 원행스님 (이재경)

장시간 회의에 함께해 주신 이사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사회복지법인 금강 제100차 이사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다.

8. 폐회선언 : 2026년 9월 29일 17:48 폐회.

2026 년 9 월 29 일

사 회 복 지 법 인 금 강

원본대조필



참석이사 전원 기명 날인 하다

대표이사 : 이 재 경

이 사 : 여 무 의

이 사 : 신 의 수

이 사 : 김 윤 현

이 사 : 장 준 철

이 사 : 정 영 건

이 사 : 곽 인 철

이 사 : 오 정 옥

감 사 : 김 을 섭

감 사 : 김 명 희

